

[첨부1]

자라섬캠핑장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용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00.00 ~ 2019.00.00 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 용 료)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를 말하며, 낙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하 '기관'이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사용 개시일 전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0조의 제2호 내지 제7호, 제19조의 제8호 및 제14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관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기관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단, 제1항의 사유는 제외)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6. 제19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 기타 기관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에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기관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기관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지정하는 기한 내 기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관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기관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이사장 및 기관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자동판매기 운영 특수조건)

- ① 사용자는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보건위생 및 기관의 독서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동판매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자동판매기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커피 자판기에 의해 냄새 등으로 자라섬캠핑장 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판매품목 : 음료 및 커피, 생수 등 위생적인 고품질의 식품들

※ 사용·수익허가일 이후 사용 허가기간중 법령 및 상급기관 지시 등에 의해 기관내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 지정될 경우에는 관련규정 시행일부터 해당 품목을 판매품목에서 제외한다.

④ 판매물품은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⑤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관에서 별도 안내한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⑦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기관장의 자동판매기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⑧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⑨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기관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⑩ 자동판매기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기관 및 소송자격자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⑪ 자동판매기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자라섬캠핑장 직원의 지도감독과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단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⑫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동판매기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⑬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⑭ 사용자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판매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관의 인적·물적 피해 배상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이 경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자동판매기 판매 물품 목록

분류	품목	판매가	제조회사명	비고
음료, 커피, 기타				

위 취급품목에 대하여 자동판매기 판매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용인 (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국·공유재산 사용료 완납 확인 각서

계 약 명 : 자라섬캠핑장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계약

계약금액 :

계약기간 : 2017. . . ~ 2019. . .

본인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위와 같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 운영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용)료의 미납(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규 위반에 따라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민사형사 고발 및 소송 처분을 받아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리담당관 귀하